

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군포시의회 이우천 의원 등이 발의한 「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군포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2월 3일

군 포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: 첨부 조례안 참고
2.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

가. 제출기한 : 2021년 12월 8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, FAX

다. 제출내용

1) 조례안에 대한 의견 (붙임 서식 참조)

2) 성명(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라. 제출기관 : 군포시의회 (참조: 의회사무과)

1) 주 소 :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

2) 전화번호 : 031-390-8739, FAX 031-392-4004

3) 전자우편 : js9695@korea.kr

붙임 1. 의견서 서식 1부.

2. 조례안 1부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이우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1. 11.

발의자 : 이우천, 성복임, 장경민,
이건행, 홍경호, 신금자,
이길호, 이희재, 김귀근

1. 제안이유

- 의정활동 모니터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는 모니터단 단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보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모니터단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회의에 참석하는 모니터단 단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(안 제12조)

3. 관계 법령

- 해당없음

군포시 조례 제 호

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,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실비보상 등) 제3조제4호에서 정한 모니터를 위해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제12조(실비보상 등) 제3조제4호</u> <u>에서 정한 모니터를 위해 회의</u> <u>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</u> <u>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</u> <u>급할 수 있다.</u>
<u>제12조 (생략)</u>	<u>제13조 (현행 제12조와 같음)</u>